

[]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(변경신고)서
[]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--	----

1. 신고인 기본사항

①법 인 명		②사업자등록번호	
③대 표 자 성 명		④전 화 번 호	
⑤본 점 소 재 지			

2. 신고내용

① 평가(계산)방법 기본사항

⑥사업개시일(연월일)		⑦변경 방법 적용 개 시 사 업 연 도 (연월일)	
⑧변경사유			
⑨변경사업장소재지			
⑩동일종목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			

② 평가방법 신고(변경) 내역

재고자산의 종류		평 가 방 법(변 경 전)	평 가 방 법(변 경 후)
⑪상 품 및 제 품			
⑫반 제 품 및 재 공 품			
⑬원 재 료			
⑭저 장 품			
⑮위 에 준 하 는 자 산			
⑯유 가 증 권	⑭채권		
	⑮기타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4조제3항·제6항, 제75조제2항 및 제113조제7항에 따라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(변경 신고)서,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4조제3항·제6항,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(변경신고)하거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7항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.
2.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서 :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
 - 나.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: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
 - 다.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: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
3. ⑨번란에는 본점 이외의 사업장(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종사업장 포함)의 평가방법을 변경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4. ⑩번란에는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적습니다.
5. ② 평가방법 변경 내역란에는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시 적용(변경신고 포함)받을 방법을 적습니다.